

5 가지 알아 두어야 할 사항

공공장소에서 장애에 근거한 차별

- 1 뉴저지 주 차별금지법(LAD)은 공공장소에서 장애에 근거한 차별과 학대 행위를 금지합니다. LAD는 레스토랑, 상점, 학교, 은행, 경찰서, 영화관, 감옥, 교도소, 의사 진료소, 병원, 기타 의료 시설 등을 포함한 모든 공공장소에 적용됩니다.
- 2 일반대중에게 공개된 장소는 개인의 장애에 근거하여 서비스 제공이나 대접하기를 거부하거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. 일반대중에게 공개된 장소는 장애가 있는 사람의 출입을 거부한다는 표시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. 예를 들어, 레스토랑은 청각 장애나 난청이 있는 고객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의사는 환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환자의 증상을 치료하기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.
- 3 장애에 근거한 차별로 일반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대한 접근을 축소할 수 없습니다. 일반대중에게 공개된 장소는 상품과 서비스에 장애인 또한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보조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비즈니스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한 합리적인 보조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. 여기에는 상점의 가두 픽업 서비스 제공, 극장의 장애인용 청취 기기나 자막 기기 제공, 버스 운전기사의 휠체어 사용자 승차 보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
- 4 장애에 대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보조 수단을 사용한 대가로 요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. 공공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보조 수단을 제공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러한 보조 수단을 사용한 대가로 요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. 예를 들어, 택시와 차량 공유 서비스는 장애로 인해 차에 탈 때까지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로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.
- 5 훈련된 서비스견이나 안내견이 있다는 이유로 공공장소에 대한 접근이 거부될 수 없습니다. 훈련된 서비스견이나 안내견은 일반대중에게 공개된 장소를 포함하여 언제든지 장애인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. 공공장소는 서비스견이나 안내견이 있다는 이유로 서비스나 입장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.

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거나 민원을 제출하고자 하신다면, NJCivilRights.gov를 방문하시거나, 또는 1.833.NJDCR4U로 연락해주시시오. 민권국(DCR)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뉴저지 내 모든 사람을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차별 금지법 (LAD)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, [여기를](#) 클릭하십시오.

차별 금지법 (LAD)은 보복으로부터 귀하를 보호합니다. 누구도 차별 금지법 (LAD) 위반 가능성을 신고하거나, 사내, DCR 또는 법원에 차별 관련 민원을 제기하거나, 차별 금지법 (LAD)에 따른 기타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 보복할 수 없습니다.

다른 언어 버전은 DCR 웹사이트 [리소스 섹션](#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거나 민원을 제출하고자 하신다면 NJCivilRights.gov를 방문하시거나 1.833.NJDCR4U로 연락해주시시오



뉴저지 법무장관 집무처(NJ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)

NJCivilRights.gov



DIVISION ON
NJ CIVIL RIGHTS
@CivilRightsNJ #CivilRightsNJ #StandUpAgainstHate



2024년 3월 11일